

직업성 피부질환의 관리

글/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피부질환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흔한 직업성 질환이지만 많이 간과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직업성 질환 중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피부질환이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직업성 피부질환은 2016년 전체 업무상 질병 7,068건 중 15건(0.2%), 2017년에는 8,190건의 업무상 질병 중 15건(0.18%)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소평가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로자 측면에서는 피부질환의 증상이 대체로 국소적으로 나타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복잡한 산재절차에 비해서 승인되어 얻는 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흔히 발견되는 피부징후에 대해서 직업적

노출을 확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D1)이나 직업성 요관찰자(C1)로 판정내고 사후관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직업성 피부질환은 사망에 이르는 중증 질환, 피부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만성화된 증상은 개별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감과 때로는 현저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경우에는 노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으므로 발병의 원인 물질을 확인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자극 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자극물질은 산과 알칼리, 유기용제, 비누와 세제, 소독제 및 살균제, 니켈·크롬·코발트와 같은 금속염

등이 있다. 이들은 피부의 자극을 통해서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며 노출량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감작물질이라고도 하며 니켈·크롬·코발트와 같은 금속염, 티아졸류, 카바메이트류 등 고무첨가제, 접착제와 수지, 산업용 효소, 포름알데히드·글루타알데히드 등 살균제, 화장품 첨가제, 의약품, 식물 등이 있다. 이 물질들은 감수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하게 된다. 그 외에도 고온으로 인한 화상, 땀띠, 무좀 등 진균감염,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염,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타르에 노출되어 피부에 탈색반이 생기는 백반증 역시 직업성 피부질환에 포함

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피부 질병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피부 암은 직업성 암 항목 참조).

직업성 피부질환을 일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01 원인물질 노출 중단

피부에 자극성을 가지거나 피부표면의 지질피부 자극성이 높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에는 소량의 노출로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수성이 있는 근로자들은 보호구를 착용했다라도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학적 대책이나 교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원인이 되는 물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으나 확진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물질을 이용한 첩포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 시에 취급물질 시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02 보호구 착용

피부는 호흡기와 더불어서 유해 화학 물질 인체 흡수의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노출된 피부에 대해 적절한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 것은 직업적 노출에 의한 피부질환만이 아니라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도 필수적이다. 단순히 노출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것만을 차단해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때로는 부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여 오히려 노출 수준을 높이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현장에서 유기용제 작업을 하면서 손바닥 면만 코팅된 목장갑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유기용제가 목장갑에 적셔진 채로

지속적인 노출이 발생하여 피부질환이나 인체 내 흡수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출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보호구의 재질이나 교체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03 건강진단 관리

특수건강진단 문진 시 의외로 많은 근로자들이 피부 질환을 호소한다. 증상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증상을 호소하거나 피부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급물질이나 작업방법 증상 양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수의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기타 건강장애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위탁기관이 건의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04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관리

일반적인 작업환경 관리를 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물에 젖거나 땀에 젖은 상태에서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나 반복적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 업무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피부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각질층의 탈락과 건조, 피부균열 등으로 피부의 방호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방수나 배수 조치, 작업화나 피복의 교체, 적절한 휴게 시간 제공, 저자극성 세정제 및 보습제의 비치 등을 고려한다. 과량 전신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신을 샤워하거나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피부 흡수로 인한 급성 중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는 자외선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휴식시간과 그늘막 제공, 필요시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공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당, 단체 급식실, 기타 위생 상의 이유로 자외선 살균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